

부산지방법원 2024. 11. 27 선고 2024가단335817 판결 [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

담당변호사 이점인

피고1. B

2. C

3. D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4. 11. 27.

주 문

1. 원고에게,

가. 피고 B은,

1)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ㄱ, ㄴ, ㄷ, ㄹ, ㅁ, ㅂ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가)부분 19.8㎡를 인도하고,

2) 2024. 8. 3.부터 제1의 가 1)항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5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

나. 피고 C, D는 공동하여,

1)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ㄷ, ㅅ, ㅇ, ㅈ, ㅊ, ㅊ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나)부분 19.8㎡를 인도하고,

2) 2024. 7. 11.부터 제1의 나 1)항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

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김유신

별지